

인천소래

휴먼시아 국민임대아파트 A1BL

바다와 숲의 아름다움을 더한 휴먼시아의 완벽한 하모니 인천소래 국민임대가 귀하의 삶을 빛내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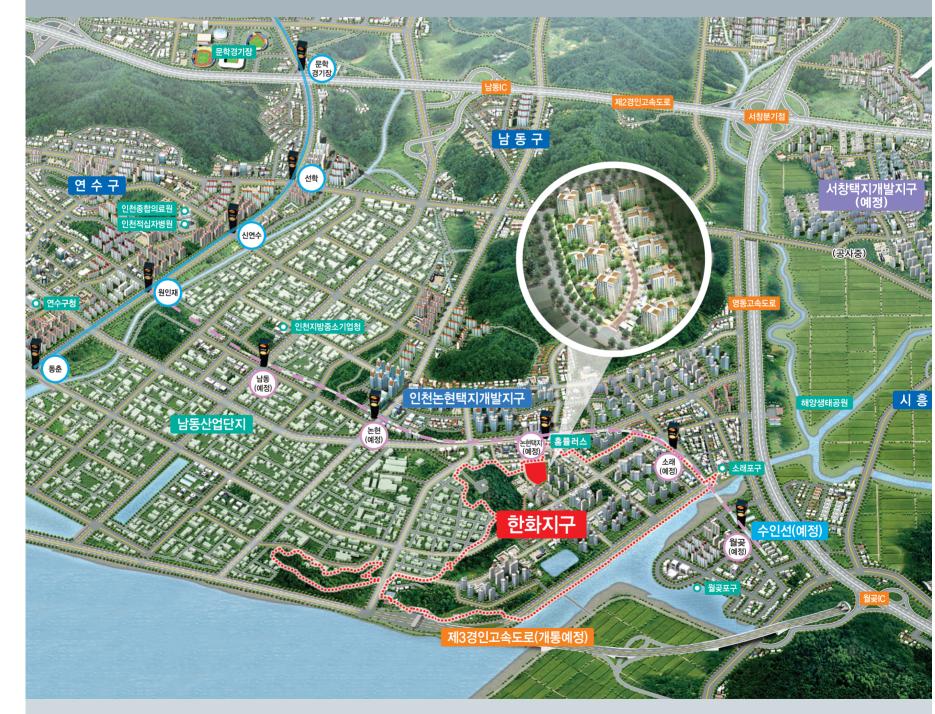




Location

편리한 생활과 푸른 미래가 활짝 피어나는 곳! 인천소래 휴먼시아의 특별한 프리미엄을 누리십시오





오봉산의 푸르름과 소래포구(소래 습지공원)

- ★ 오봉산의 푸르름과 근린공원의 상쾌함으로 둘러싸인 숲속 생태도시
- ★ 친자연적인 생태공원 소래 습지공원은 염전지역을 다양한 생물 군락 지로 복원시켜 자연학습 및 현장체험 활동이 가능

우수한 교육환경과 풍부한 생활 편의시설이 갖추어진 미래형 생활도시

- ★ 종합병원, 홈플러스(예정) 등 풍부한 편의시설
- ★ 송도경제자유구역, 논현택지개발지구, 국제물류단지가 인접한 국제교류의 거점도시로 주목
- ★ 지구 내 초·중·고교를 비롯 근거리에 외국어고(개교예정)가 들어서 교육여건 향상 기대

하늘과 땅, 바다로 이어지는 광역교통망

- ★ 제2경인고속도로, 서울외곽순환도로, 영동·서해안 고속도로가 인접하여 수도권 진입이 용이한 멀티교통망 구축
- ★ 수인선 논현택지역(개통예정)이 5분거리에 위치하며 인천지하철 1호선 및 서울지하철 4호선과 연결되어 수도권 전철망을 쉽게 이용
- ★ 송도국제도시를 15분 이내에 도달할 수 있으며, 인천대교의 완공 으로 인천국제공항과의 접근성 향상





▲ 본 교통망도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도이므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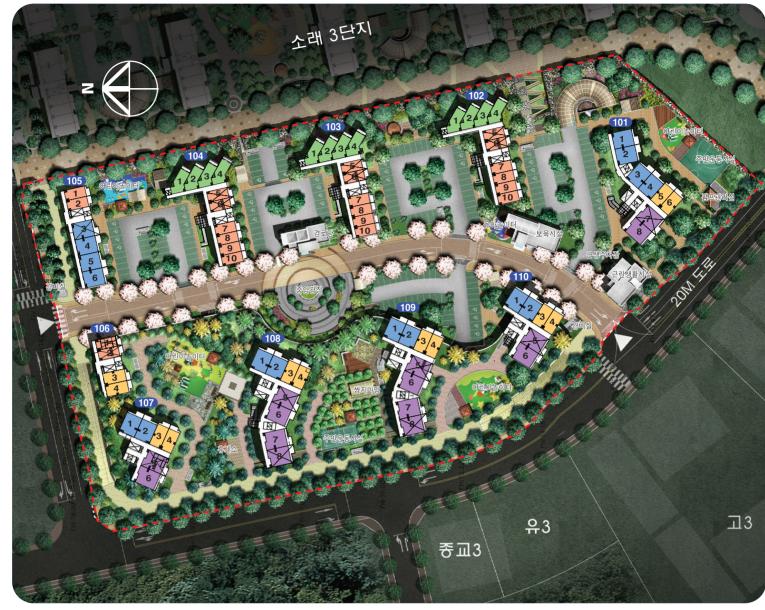
) 인천소래 휴먼시아 토지이용계획 上老門以上 A1BL A12BL A6BL 남동공업2단 범 도시개발구역 단독주택용지 __ 연립주택용지 공동주택용지 ₩ 근린생활용지 일반상업용지 문화시설 종 교 시 설 ▋ 의 료 시 설 유 보 공 원 A8BL 주 차 장 광 보행자전용도로

Landscape A1BL

882세대 대단지의 더 높은 자부심 자연 친화적인 전원 아파트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 본 단지배치도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도이므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COMMUNITY A1 1 1 1 1

A1BL 총 882세대

· 29 : 232세대

· 36A : 174세대(측세대 12)

· 36B : 72세대

· 46 : 220세대

· 51 : 184세대

기분좋은 햇살과 시원하게 부는 바람이 함께 하는 곳 자연과 사람을 위한 설계로 365일 건강한 주거공간

꿈과 재미를 더해주는 어린이 놀이터

이용반경을 고려하여 4개소로 적정 분산 배치 하였으며 안전하고 창의적 인 놀이공간으로 만들어집니다.

풍요로운 자연과 함께하는 휴게소 및 산책로

다양한 식재를 통해 단지 곳곳에서 자연을 만날 수 있으며 단지내산책로와 연계된 휴게공간은 자연속의 웰빙공간이 되어드립니다.

건강과 휴식을 고려한 주민운동시설

배드민턴 코트와 농구장 등 휴식공간 조성으로 건강한 생활과 쾌적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합니다.





232세대

주거공용면적	16.3119m²
공급면적	45.7919m²
기타공용면적	1.7535m²
주차장면적	17.5103m²
계약면적	65.0557m²

전용면적	29.48m²
거실/침실	12.36m²
주방/식당	12.31m²
욕실	3.08m²
 현관	1.73m²
서비스면적	
발코니1	6.07m²









- 정부의 법정계량단위 사용 권장으로 평단위를 표기하지 않았사오니 아래의 산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를 평으로 환산하는 산식 : ㎡×0.3025=평)
- 상기 투시도 및 평면도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도이므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사업승인 변경에 따라 일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세대내 가구, 문짝 등의 형태, 무늬 및 내부마감재 색상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치수는 벽체중심선을 기준으로 표시하였습니다.
- 세대 현관문은 벽 및 엘리베이터홀과 면하여 시공될 수 있습니다.



174세대(측12세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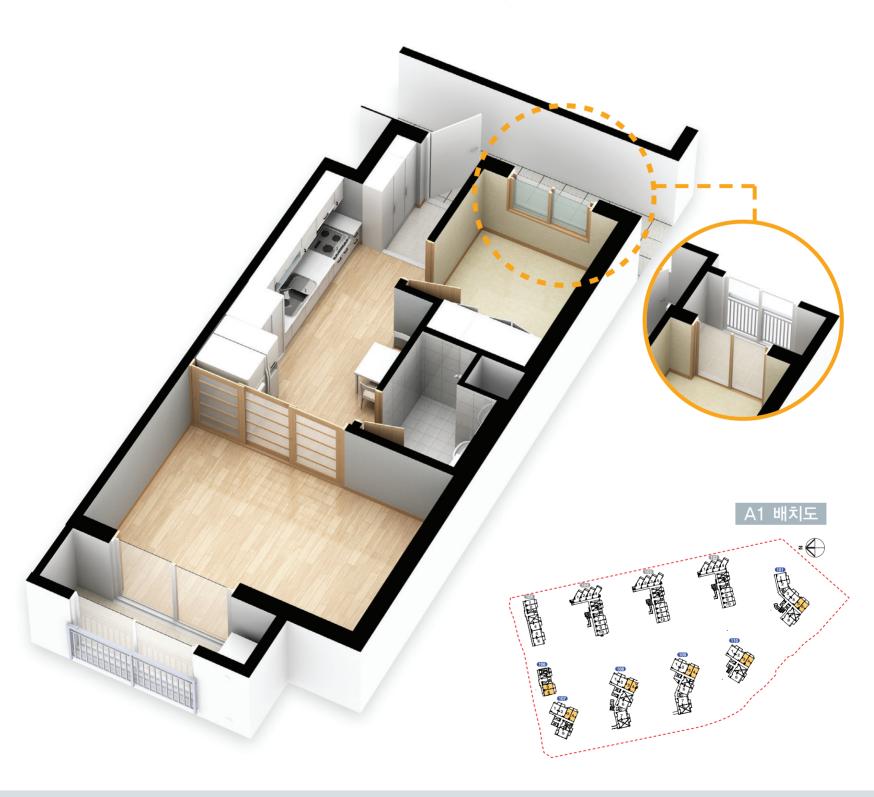
주거공용면적	19.9648m²
공급면적	56.5848m²
기타공용면적	2.1782m²
주차장면적	21.7513m²
계약면적	80.5143m²

전용면적	36.62m²
거실/침실	11.24m²
침실1	8.23m²
주방/식당	12,32m²
욕실	3.27m²
현관	1.56m²
서비스면적	
발코니1	7.03m²
발코니2(측세대)	3.08m²









- 정부의 법정계량단위 사용 권장으로 평단위를 표기하지 않았사오니 아래의 산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를 평으로 환산하는 산식 : ㎡×0.3025=평)
- 상기 투시도 및 평면도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도이므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사업승인 변경에 따라 일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세대내 가구, 문짝 등의 형태, 무늬 및 내부마감재 색상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치수는 벽체중심선을 기준으로 표시하였습니다.
- 세대 현관문은 벽 및 엘리베이터홀과 면하여 시공될 수 있습니다.



72세대

주거공용면적	19.9510m²
공급면적	56.8910 m²
기타공용면적	2,1972m²
주차장면적	21.9414m²
계약면적	81.0296m²

전용면적	36.94m²
거실/침실	11.97m²
 침실1	7.15m²
주방/식당	13.47m²
욕실	2.73m²
 현관	1.62m²
서비스면적	
발코니1	6.15m²







- 정부의 법정계량단위 사용 권장으로 평단위를 표기하지 않았사오니 아래의 산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를 평으로 환산하는 산식 : ㎡×0.3025=평)
- 상기 투시도 및 평면도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도이므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사업승인 변경에 따라 일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세대내 가구, 문짝 등의 형태, 무늬 및 내부마감재 색상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치수는 벽체중심선을 기준으로 표시하였습니다.
- 세대 현관문은 벽 및 엘리베이터홀과 면하여 시공될 수 있습니다.



220세대

주거공용면적	25.0369m²
공급면적	71.8369m²
기타공용면적	2,7836m²
주차장면적	27.7979m²
계약면적	102.4184m²

전용면적	46.80m²
거실	15.14m²
침실1	8.31m²
침실2	9.66m²
주방/식당	8.78m²
욕실	3.39m²
 현관	1.52m²
서비스면적	
발코니1	9.49m²

■ 본 면적표의 전용 면적 및 발코니 면적은 확장 전 기본형 면적입니다.



3200

3200

3300

발코니

3300





- 정부의 법정계량단위 사용 권장으로 평단위를 표기하지 않았사오니 아래의 산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를 평으로 환산하는 산식 : ㎡×0.3025=평)
- 상기 투시도 및 평면도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도이므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사업승인 변경에 따라 일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세대내 가구, 문짝 등의 형태, 무늬 및 내부마감재 색상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치수는 벽체중심선을 기준으로 표시하였습니다.
- 세대 현관문은 벽 및 엘리베이터홀과 면하여 시공될 수 있습니다.



Type 51.92m²

8690

184세대

주거공용면적	27.5667m²
공급면적	79.4867m²
기타공용면적	3.0882m²
주차장면적	30.8391m²
계약면적	113,4140 m²

전용면적	51.92m²
거실	17.96m²
침실1	$9.89 \mathrm{m}^2$
침실2	9.83m²
주방/식당	9.35m²
욕실	3.39m²
 현관	1.50m²
서비스면적	
 발코니1	10.28m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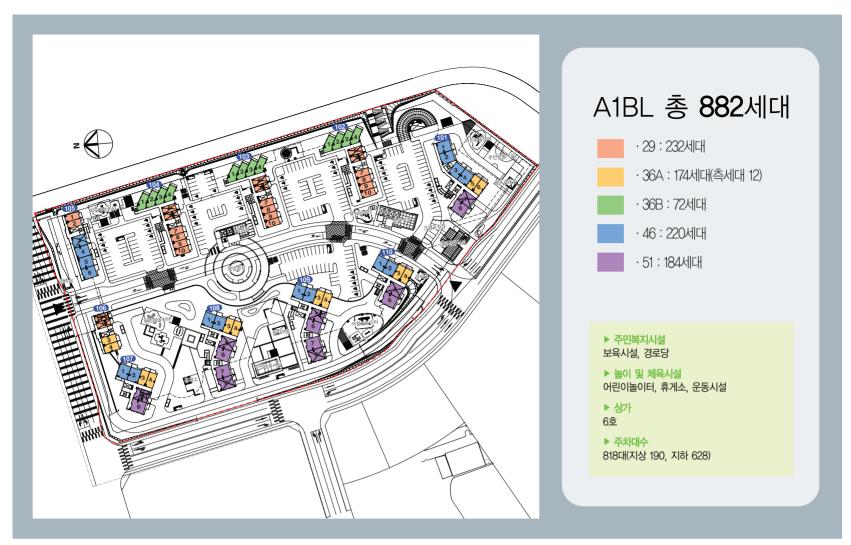


- 정부의 법정계량단위 사용 권장으로 평단위를 표기하지 않았사오니 아래의 산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를 평으로 환산하는 산식 : ㎡×0.3025=평)
- 상기 투시도 및 평면도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도이므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사업승인 변경에 따라 일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세대내 가구, 문짝 등의 형태, 무늬 및 내부마감재 색상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치수는 벽체중심선을 기준으로 표시하였습니다.
- 세대 현관문은 벽 및 엘리베이터홀과 면하여 시공될 수 있습니다.

COMPLEX MAP 동호배치(A1BL)

101동 / 112세대												10	2동 /	/ 88x	네대					103동 / 88세대									
1508	1507	1506	1505	1504	1503																								
1408	1407	1406	1405	1404	1403																								
1308	1307	1306	1305	1304	1303																								
1208	1207	1206	1205	1204	1203	1202	1201		1210	1209	1208	1207								1210	1209	1208	1207						
1108	1107	1106	1105	1104	1103	1102	1101		1110	1109	1108	1107								1110	1109	1108	1107						
1008	1007	1006	1005	1004	1003	1002	1001		1010	1009	1008	1007	1006	1005						1010	1009	1008	1007	1006	1005				
908	907	906	905	904	903	902	901		910	909	908	907	906	905						910	909	908	907	906	905				
808	807	806	805	804	803	802	801		810	809	808	807	806	805						810	809	808	807	806	805				
708	707	706	705	704	703	702	701		710	709	708	707	706	705						710	709	708	707	706	705				
608	607	606	605	604	603	602	601		610	609	608	607	606	605	604	603	602	601		610	609	608	607	606	605	604	603	602	601
508	507	506	505	504	503	502	501		510	509	508	507	506	505	504	503	502	501		510	509	508	507	506	505	504	503	502	501
408	407	406	405	404	403	402	401		410	409	408	407	406	405	404	403	402	401		410	409	408	407	406	405	404	403	402	401
308	307	306	305	304	303	302	301		310	309	308	307	306	305	304	303	302	301		310	309	308	307	306	305	304	303	302	301
208	피로티	206	205	204	203	202	201		210	209	208	207	피로티	피로티	204	203	202	201		210	209	208	207	피로티	피로티	204	203	202	201
108	피로티	106	105	104	103	102	101		110	109	108	107	피로티	피로티	104	103	102	101		110	109	108	107	피로티	피로티	104	103	102	101
=,		0.11	0.11		A				00	22	00	A		22	0.15	0/5					00	00	A		00	0.15	0.15		
51	51	36A	36A	46	46	46	46		29	29	29	29	29	29	36B	36B	36B	36B		29	29	29	29	29	29	36B	36B	36B	36B

104동 / 88세대								105동 / 66세대							106동 / 44세대						107동 / 88세대							
																		1506	1505	1504	1503	1502	1501					
																						1406	1405	1404	1403	1402	1401	
																		측세대					1306	1305	1304	1303	1302	1301
1210	1209	1208	1207								1206	1205	1204	1203				1204	1203	1202	1201		1206	1205	1204	1203	1202	1201
1110	1109	1108	1107								1106	1105	1104	1103				1104	1103	1102	1101		1106	1105	1104	1103	1102	1101
1010	1009	1008	1007	1006	1005						1006	1005	1004	1003	1002	1001		1004	1003	1002	1001		1006	1005	1004	1003	1002	1001
910	909	908	907	906	905						906	905	904	903	902	901		904	903	902	901		906	905	904	903	902	901
810	809	808	807	806	805						806	805	804	803	802	801		804	803	802	801		806	805	804	803	802	801
710	709	708	707	706	705						706	705	704	703	702	701		704	703	702	701		706	705	704	703	702	701
610	609	608	607	606	605	604	603	602	601		606	605	604	603	602	601		604	603	602	601		606	605	604	603	602	601
510	509	508	507	506	505	504	503	502	501		506	505	504	503	502	501		504	503	502	501		506	505	504	503	502	501
410	409	408	407	406	405	404	403	402	401		406	405	404	403	402	401		404	403	402	401		406	405	404	403	402	401
310	309	308	307	306	305	304	303	302	301		306	305	304	303	302	301		304	303	302	301		306	305	304	303	302	301
210	209	208	207	피로티	피로티	204	203	202	201		206	205	204	피로티	202	201		204	203	피로티	피로티		206	피로티	204	203	202	201
110	109	108	107	피로티	피로티	104	103	102	101		106	105	104	피로티	102	101		104	103	피로티	피로티		106	피로티	104	103	102	101
			A											A					A							A		
29	29	29	29	29	29	36B	36B	36B	36B		46	46	46	46	29	29		36A	36A	29	29		51	51	36A	36A	46	46



▲ 본 단지배치도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도이므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08동 / 110세대							
		1506	1505	1504	1503	1502	1501
		1406	1405	1404	1403	1402	1401
		1306	1305	1304	1303	1302	1301
1208	1207	1206	1205	1204	1203	1202	1201
1108	1107	1106	1105	1104	1103	1102	1101
1008	1007	1006	1005	1004	1003	1002	1001
908	907	906	905	904	903	902	901
808	807	806	805	804	803	802	801
708	707	706	705	704	703	702	701
608	607	606	605	604	603	602	601
508	507	506	505	504	503	502	501
408	407	406	405	404	403	402	401
308	307	306	305	304	303	302	301
피로티	207	206	피로티	204	203	202	201
피로티	107	106	피로티	104	103	102	101
51	51	51	51	36A	36A	46	46

109공 / 110세대							
		1506	1505	1504	1503	1502	1501
		1406	1405	1404	1403	1402	1401
		1306	1305	1304	1303	1302	1301
1208	1207	1206	1205	1204	1203	1202	1201
1108	1107	1106	1105	1104	1103	1102	1101
1008	1007	1006	1005	1004	1003	1002	1001
908	907	906	905	904	903	902	901
808	807	806	805	804	803	802	801
708	707	706	705	704	703	702	701
608	607	606	605	604	603	602	601
508	507	506	505	504	503	502	501
408	407	406	405	404	403	402	401
308	307	306	305	304	303	302	301
피로티	207	206	피로티	204	203	202	201
피로티	107	106	피로티	104	103	102	101
Г1.	F1.	F1.	Г1	0/4		A	11.
51	51	51	51	36A	36A	46	46

100도 / 110세대

110동 / 88세대							
1506	1505	1504	1503	1502	1501		
1406	1405	1404	1403	1402	1401		
1306	1305	1304	1303	1302	1301		
1206	1205	1204	1203	1202	1201		
1106	1105	1104	1103	1102	1101		
1006	1005	1004	1003	1002	1001		
906	905	904	903	902	901		
806	805	804	803	802	801		
706	705	704	703	702	701		
606	605	604	603	602	601		
506	505	504	503	502	501		
406	405	404	403	402	401		
306	305	304	303	302	301		
206	피로티	204	203	202	201		
106	피로티	104	103	102	101		
			A	A			
51	51	36A	36A	46	46		

인천소래 휴먼시아 1단지 (1BL)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 ※ 국민임대주택은 30년이상 임대하며, <mark>입주자에게 분양하지 않는</mark> 공공건설임대주택입니다.
-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이하의 <mark>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mark>에 처하게 됩니다.
- ① 건설위치 : 인천 남동구 고잔동 소래·논현 도시개발사업지구내 1 B/L 국민임대주택 882호

② 임대대상 및 조건

▶ 임대대상

					공급호수		세대당 계약면적(m²)					구조
신청형별	유형	건설호수	계	우선공급	일반공급	공급면적(주거전용)	주거공용면적	기타공용면적(주차장)	합계	최고층수	해당동	및 난방
29	29	232	232	173	59	29.48	16,3119	19,2638(17,5103)	65.0557	10, 12	102, 103, 104, 105, 106	철근
36	36A	174	246	186	60	36.62	19.9648	23.9295(21.7513)	80.5143	12, 15	101, 106, 107, 108, 109, 110	골 드 콘크리트
30	36B	72	240	100	60	36.94	19.9510	24.1386(21.9414)	81.0296	6	102, 103, 104	지역난방
46	46	220	220	169	51	46.80	25,0369	30,5815(27,7979)	102,4184	12, 15	101, 105, 107, 108, 109, 110	
51	51	184	184	136	48	51,92	27,5667	33,9273(30,8391)	113.4140	12, 15	101, 107, 108, 109, 110	복도식

- 신청접수는 유형 구분없이 신청형별로만 받음
- 29m² 13평, 36m²는 17평, 46m²는 21평, 51m²는 24평에 해당됨. ※평수=(주거전용+주거공용)*0.3025

▶ 임대조건

티틴		임대	조건		OLT
신청 형별		임대보증금 (원)	월임대료 (원)	입주 예정	
02	계	계약금	전금	열심네뇨 (건)	VII 0
29	13,100,000	2,600,000	10,500,000	95,000	
36	15,450,000	3,000,000	12,450,000	150,000	2011년 04월
46	24,022,000	4,800,000	19,222,000	195,000	2011년 04월
51	31,296,000	6,200,000	25,096,000	220,000	

- 이 주택의 최초 임대차계약 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음
- 위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 기간 동안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으로, 동별 층별, 향별로 차등이 없으며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음

-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의 면적을 말하며, 기타공용면적은 관리사무소, 노인정, 경비초소, 지하층. 지하주차장 등의 면적임.
- 갱신 계약시 국민임대주택 입주기준 소득을 초과하는 입주자는 소득초과 정도에 따라 일정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납부하거나 퇴거하여야 함
- •위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의 임대조건으로 예비입주자의 계약체결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 체결하여야 함.

- 임대보증금 중 계약금은 계약 체결시, 잔금은 입주전에 완납하여야함. 임대보증금 중 계약금은 계약 체결시, 잔금은 입주전에 완납하여야함. 위 입주예정월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통보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2조 제4항의 우선공급 대상자인 도시계획사업(인천기족공원 조성사업) 철거대 상자 중 국민임대 입주기준소득을 초과자의 경우 아래와 같이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할증하여 부과함.

기준소득 초과비율	10% 이하	10% 초과 30% 이하	30% 초과
임대조건 할증비율	10%	20%	40%

③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10,03,26) 현재 무주택세대주로서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이 무주택자며, **이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가준에 해당되는 자**

구분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가구원수	월평균소득기준	참고사항					
소득	3인이하거구	2,722,050원이하	※가구원수는 세대주(신청자)와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을					
끄ㅋ	4인가구	2,960,380원이하	모두 포함하여 산정함					
	5인이상가구	3,291,880원이하	※월평균소득액은 본인과 세대원(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토지	개별공시지가 기준 7,320만원 이하 (년 ※지적법에서 정한 14개 지목(전, 답, : 농업인과 소유자가 동일한 토지는 저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광천지, 염	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이 보유한 모든 토지가액의 총합) 전, 대, 공장용지, 주차장,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양어장, 잡종지)을 대상으로 하여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으로 하되, 농지원부상 있음)					
자동차	현재가치 기준 2,318만원 이하 (자동차등록원부상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매년 10%씩 감가상각하며, 세대가 보유한 차량가액은 합산하지 않고 개별 차량가액으로만 판단)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대상으로 세대주 및 세대원(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각각의 자동차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자동차등록원부상 장애인 사용자동차 (국가유공재상이등급 1~7등급) 보철용 차량포함)는 제외함(소명의무는 자산소유자에게 있음)							

- 전용면적 50m²미만 주택은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금액의 합이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세대에게 먼저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초과 70%이하인 세대에게 공급
- 일반공급시 동일 순위내 경쟁이 발생할 경우 미성년자녀가 3명이상인 가구에게 우선공급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만 20세 이상의 세대주만 신청가능함. (단, 소년소녀가정 우선공급 대상자는 예외로 함)
- 단독세대쥐본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자는 전용면적 40㎡이하 국민임대주택만 신청할 수 있음. 단. 단독세대주중 주민등록표등본의 구성이 ① 사위와 장인 또는 장모 ② 며느리와 시아버지 또는 시어머니 ③ 미혼인 형제·자매(단. 부모의 사망 사실이 확인된 경우)로 되어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신혼부부주택 신청자 유의사항!

- ※ 신혼부부주택 우선공급 신청자의 경우 상기 신청자격 외에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서 ② 혼인기간이 5년이내이고 ③ 혼인기간내 임신 또는 출산(입양포함)하여 자녀가 있으며 ④ 50m²이상 주택인 경우 청약자축 및 주택청약종합자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이상 납부한 자만 신청이 가능
- ※ 단, 수도권지역(서울·경기·인천)은 하나의 주택건설지역으로 보되, 동일순위 경쟁시 해당 주택건설지역 (인천시)거주자가 우선하며, 전용50m²미만 주택은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세대에게 우선 공급
- ※ 임신사실 확인: 입주자모 |공고익 이후 의료번에 의하 의료기과에서 박급받은
- ※ 임신 중인 경우 자녀수 산정은 태아의 수와 관계없이 1명으로 인정
 ※ 임신 또는 입양부부가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 · 불법낙태 · 입주전 파양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 취소
 - 임신부부 출산관련 서류 : 출생증명서, 유산 · 낙태관련 진단서 등
- (단.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임신상태 유지시 입주지정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제출) 입양부부 입양유지 확인서류 :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

④ 공급일정

신청형별		신청자격		신청접수	당첨지발표	계약체결	장소(신청접수, 계약)
2005		월평균소득	순위	COUT	O.D.VIST	계극세ㄹ	6포(같더HT, 세크/
	가구원수	월평균소득		0040 0 4 07			
	3인이하 4인 5인이상	2,722,050 이하 2,960,380 이하 3,291,880 이하	우선공급	2010.04.07 (10:00~16:30)			신청접수 : LH 인천지역 본부
-10 -1-1	가구원수	월평균소득			2010.04.30		만수동 사옥
전용 면적 50㎡ 미만	3인이하 4인 5인이상	1,944,320 이하 2,114,560 이하 2,351,340 이하	일반공급 1,2,3 순위	2010.04,08 (10:00~16:30)	(15:00) • 공사홈페이지 게시	2010.05.13~05.14 (09:30~15:30)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 1007-8) 계약체결 :
	가구원수	월평균소득			0.2		LH 인천본부 구월동 사옥
	3인이하 4인 5인이상	2,722,050 이하 2,960,380 이하 3,291,880 이하	일반 공급 1,2,3 순위	2010.04.09 (10:00~16:30)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1464)

전용 면적	가 <mark>구원수</mark> 3인이하	월평균소득 2,722,050 이하	우선공급 일반공급1순위	2010.04.07 (10:00~16:30) 2010.04.08 (10:00~16:30)	2010.04.30 (15:00)	2010,05,13~05,14	신청접수 : LH 인천지역 본부 만수동 사목 1007 이
50m² 이상	4인	2,960,380 이하	일반공급2순위	2010.04.09	• 공사홈페이지 게시	(09:30~15:30)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 1007-8) 계약체결 :
	5인이상	3,291,880 이하	일반공급3순위	(10:00~16:30)	0 .2		LH 인천본부 구월동 사옥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1464)

※ 신청접수는 신청순위별로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선순위 신청접수 결과 모집호수를 초과하면 후순위자는 접수하지 않음. (후순위 접수 여부는 선순위 접수마감일 20:00 LH(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에 게시함)

⑤ 입주자선정

▶ 일반공급

7 2000									
구 분		입주자선정 방법							
전용 면적	및 그 세대원 포함	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 소득금액의 합이 가구원수별 가구 고, 남은 주택이 있을경우 가구원수별 게 공급	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세대	2. 상기 소득범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이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① 1순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천시 남동구에 거주하는 자 ② 2순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천시 연수구, 남구, 부평구, 및 부천시, 시흥시에 거주하는 자					
전공 한국 50㎡ 미만	가구원수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③ 3순위: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 동순위내 경쟁발생시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에게 우선 공급됨					
	3인이하	1,944,320	2,722,050	※ 거주지는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주소지로 판단함					
	4인	2,114,560	2,960,380						
	5인이상	2,351,340	3,291,880						
전용 면적 50㎡ 이상	② 2순위 : 청약저축 7	l입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	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이상 납입한 자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 자	 ※ 동순위내 경쟁발생시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인천시 남동구 거주자 순으로 우선공급 ※ 주백정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청약저축 가입자로 봄 ※ 청약저축을 사용하여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후에 동일한 통장을 재사용하여 다른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음. 					

▶ 우선공급

구 분	입주자선정 방법
사업지구 철거민 등 (주택공급규칙 제32조4항)	사업주체, 지자체 등 관련기관의 요청에 의함 (단, 신청접수기간에 본인이 별도로 신청하여야 함)
장애인 등 (주택공급규칙 제32조5항)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이래 대상자에게 일정호수를 우선공급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1년이상 부양하고 있는 자(부양여부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실에 의함) ②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재배우자가 정신지체인, 정신장애인 및 제3급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인 경우 포함) 단, 장애등급이 높은 순서대로 입주자 선정 ③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제대군인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입주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북한이탈주민 ⑤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제2조제호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중소기업청에서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자 ⑥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⑦ 소년·소녀가정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추천하는 자 ⑧ 65세이상 고령자 ⑨ 「아동복지법」제2조제7호에 따른 가정위탁을 통하여 아동을 보호·양육하는 조부모 또는 친인척으로서 시장 등이 추천하는 자 ⑩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피해자로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중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여성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3자녀 이상기구 (주택 공급규 칙 제32조6항)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 민법」상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주
국가유공자 등 (주택공급규칙 제32조7항)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이래 대상자 중 국가보훈처장이 추천하는 자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②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③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 ④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영구임대주택 거주자 (주택공급규칙 제32조8항)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이닌 영구임대주택 계약자로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세대주에게 일정호수를 우선공급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등 (주택공급규칙 제32조9항)	행정안전부장관이 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임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한 자 및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중 LH(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로부터 전세임대 주택을 공급받은 자

▶ 신혼부부주택 우선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10항)

구 분	입주지선정 방법
입주자 선정순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5년이내 이고, 그 기간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 포함)해서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주 에게 아래의 순위에 따라 주택을 공급 ① 1순위: 혼인기간이 3년 이내 ② 2순위: 혼인기간이 3년 초과 5년 이내 단, 전용면적 50㎡미만 주택은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소득금액의 합이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세대에게 먼저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가구원수별 기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조과 70%이하인 세대에게 공급
1, 2순위내 경쟁시 입주자 선정	제 순위 및 제2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인천시)의 거주자 * 수도권(서울·경기·인천) 거주자가 주택공 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 ② 자녀 수가 많은 자 * 재혼시 전혼 자녀 포함 ③ 자녀수도 동일할 경우 추첨으로 입주자 선정

▶ 우선공급 배정호수(주택공급규칙 제32조에 의거)

· 구근이답 배경오구(구곡이답파곡 제)/2조에 크기/													
신청 형별 (m²)	공급 규칙 제32조 제4항 (철거민)	공급규칙 제32조 제5항					공급	공급 규칙	공급 규칙	공급 규칙	공급 규칙		
		계	노부모 부양, 65세이상 고령자	장애인	장기 복무 제대 군인	중소 기업 근로자	북한이탈주 민, 한부모 가족, 가정 폭력피해자	소년소녀 가정, 아동위탁 가정	규칙 제32조 제6항 (3Th d)	제32조 제7항 (국가 유공자)	제32조 제8항 (영구임대 거주자)	제32조 제9항 (간이공작 물거주자)	제32조 제10항 (신혼 부부)
29	1	46	12	12	5	4	7	6	23	24	6	4	69
36	1	51	13	13	5	5	8	7	24	25	8	4	73
46	1	46	12	12	4	5	7	6	23	22	6	4	67
51	1	35	10	9	3	3	5	5	19	18	5	3	55
계	4	178	47	46	17	17	27	24	89	89	25	15	264

* 우선공급신청자가 배정호수를 초괴할 경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2조에 의한 배점기준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우선공급 탈락자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됨 (국가유공자 등은 국가보훈처에서 정한 순위에 의함) **우선공급 탈락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 공급 신청자로 전환됨**

▶ 동일 순위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

제123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아래 각 호의 배점을 합산한 순위대로 선정하되 동일 점수인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 11,592 11 2 11 1 1 2 1 1 1 1 1 2 1 1 1 1 1 2 1						
구 분	3점	2점	1점			
① 세대주 나이	50세 이상	40세 이상	30세 이상			
② 부양가족수	3인 이상	2인	1인			
③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5년 이상	3년 이상 5년미만	1년이상 3년미만			
④ 미성년자녀수(만20세미만)	3자녀이상	2자녀	-			

- ⑤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1년 이상 부양자 : 3점
- ⑥ 중소기업중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임원제외): 3점
- ⑦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로부터 1년이상 건설근로자퇴직공제증지를 교부받은 건설근로자: 3점
- ® 주택공급규칙 제31조제1항 제1호~제5호 제7호, 제7호의2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자 : 3점(전용면적 40m²미만 신청자만 해당)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국가유곡교로 중 제상으로 작고 아타다음으로 국 40m 에는 근용적으로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평가액 이하인 자, 북한이탈주민, 일군위안부피해자,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자로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평가액 이하인 자, 아동복자시설 퇴소자로서 아동복자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기타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자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 3점 (전용면적 40~50㎡미만 주택 신청자만 해당)
- ①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추가납입회수 (전용면적 50m²이상 주택 신청자만 해당)
 - 가. 각 순위별 최저 납입횟수보다 12회이상 추가납부자 2점
 - 나, 각 순위별 최저 납입횟수보다 6회이상 추가납부자 1점
- ①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중 청약저축가입자: 3점 (전용면적 50m²이상 주택 신청자만 해당)
- ※ ⑤,⑥,⑧,⑨,⑪의 가점은 주택공급규칙 제32조제5항에 의한 우선공급 입주자 선정시에는 적용하지 않음
- ※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형제·자매(만 20세 이하 또는 만60세 이상인 자에 한함)를 말하며, 세대분리된 배우자와 그 부양가족 포함

⑥ 신청서류

- ▶ 주택을 신청할 때 반드시 필요한 서류(모든 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제출)
- 주민등록표등본 1통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표시되어야 함)
- ※ 배우자와 세대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제출
- ※ 반드시 세대원의 주민번호, 전입일/변동일,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성명 관계란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요청하셔야 함
- 주민등록표초본 1통 (주소변동사항 전부표기): 이래에 해당하는 경우 제출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변동자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남동구 거주자로서 주민등록표 등본상 남동구에서의 거주기간이 확인되지 않는 자 (남동구 거주기간에 따른 가점 취득시 주민등록표 초본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인에게 있음)
-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1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자로서
- 주민등록표등본상 해당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자 → 본인 및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의 - ____ 주민등록초본 추가
- 건강(의료)보험증 사본(세대주 및 만20세 이상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하며 신청자와 동일등본상의 세대원이 개 이상의 건강보험증에 분리하여 등재되어 있는 경우 각각의 사본 모두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1통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이래 해당자만 제출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의 외국인등록증 사본 추가제출
- 신분증, 도장(본인 신청시 서명으로 대체 가능) • 국민주택공급신청서 1통(전용 50m²이상 주택을 신청하려는 청약저축 1,2순위자 및
- 주택청약종합저축 1, 2 순위자와 신혼부부 우선공급 신청자의 경우만 가입은행에서 발급) • 국민임대주택공급신청서 및 무주택서약서(공사 소정양식으로 접수장소에서 작성하여 제출)
- ▶ 다음 항목 해당자만 제출하는 서류

• 소득입증서류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배우자 만20세이상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 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의 소득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함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	일반근로자	· '09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직인날인) 또는 '09년 소득금액증명서(재직증명서 첨부)	· 해당직장 · 세무서			
자	'10년 신규취업자 및 전직자	· '10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직인날인)	·해당직장			
자 영 잡 자	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자	· '08년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 사업자등록증 사본	·세무서			
차	간이과세자중 소득세 미신고자	·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 세무서			
신규	가사업자 등 소득입증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자	·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 · 시업자등록증 사본	· 국민연금관리공단 · 세무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ㆍ 수급자 증명서	·동사무소			
	무직자, 일용직 근로자	· 비사업자 확인 각서(공사 소정양식)	· 접수장소			

▶ 대리신청시 추가로 구비할 서류

- 본인. 배우자 외에는 대리신청으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서류외에 이래 서류가 추가로 필요함
- 신청위임용 인감증명서 1통
 신청자의 인감이 날인된 신청위임장 1통
 대리 신청자의 신분증 및 도장

항 목	공급대상	제출서류	발급처
신청자격 보완서류	①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세대분리, 미혼, 이혼, 시별 등)	가족관계증명서	동사무소
	① 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 존속을 포함)을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여 1년 이상 부양하고 있으나 제출한 주민등록표등본으로 부양기간을 확인할 수 없는 자	직계존속의 주민등록표초본	동사무소
	②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된 자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동사무소
	③「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제대군인	국가보훈처에 신청	국가보훈처
	④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시,군,구청
	⑤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2조제1호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종시하는 근로자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확인서	지방중소기업청
	⑥ 민법상 미성년(만20세미만)자인 3명이상의 자녀가 있으나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이 안되는 자	가 족 관계증명서	동사무소
우선 공급	⑦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로서 여성부장관이 정하는 자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6개월 이상입소확인서, 여성부폭 력 피해 여성 주거지원시설 2년 이상 입주시실 확인서	시.군.구청
대상자	⑧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 족증 명서	동사무소
	⑨ 소년 · 소녀가정으로서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추천하는 자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추천서	시.군.구청
	⑩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5·18 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	국가보훈처에 신청	국가보훈처
	⑪ 영구임대주택 거주지중 수급자가 아닌 자	임대차계약서시본, 계약사실증명원	해당관리소
	②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및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중 나(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로부터 전세임대주택을 공급받은 자	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 확인각서	접수장소
	⑬ 아동위탁가정으로서 시장 등이 추천하는 자	시장 등의 추천서	동사무소
	④ 신혼부부주택 우선공급신청재(혼인기간 5년이내, 자녀의 수, 임신사실 확인, 자녀의 출생신고일)	자녀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 임신진단서(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	시청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①~③ 세대주나이, 부양가족수, 당해지역 거주기간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필수서류)	(별도제출 없음)
	④ 미성년자녀가 2인이상이나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이 안되는 자	가족관계증명서	동사무소
	⑤ 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 존속을 포함)을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하여 1년 이상 부양하고 있으나 제출한 주민등록표등본으로 부양기간을 확인할 수 없는 자	직계존속의 주민등록표초본	동사무소
	⑥ 중소제조업체 근로자 (상시근로자수 300인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이하의 중소제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사본, 재직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해당직장
	⑦ 1년이상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증지를 교부받은 자	퇴직공제금적립내역서 또는 건설근로자복지수첩(원본 지참)	건설근로자 공제회
동일순위	$^{\circ}$ 주택공급규칙 제31조제1항 제1호 $^{\sim}$ 제5호,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자 (전용면적 40㎡미만 신청자만 해당)		
경쟁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동사무소
배점서류	- 보호대상 한부모기족	한부모가족 증명서	동사무소
(⑤입주자	-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 특수임무수행자 포함) 또는 그 유족으로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평기액 이하인자	국가유공자 등 확인원 수급자 소득평가액 증명 서류	지방보훈청, 동사무소
선정참조)	-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시군구청
	- 일군위안부피해자	일군위안부 결정통지서 사본	여성부
	– 만 65세이상의 직계존속 부양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평가액 이하인 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평가액 이하임을 증명하는 서류	지자체(동사무소)
	- 아동복지시설 퇴소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자	추천서, 아동복지시설신고증 사본	아동복지시설
	-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해당증빙서류	관련기관
	⑨ 차상위계층에 선정되어 있는 경우(전용면적 40~50m²미만 신청자만 해당)	차상위 계층에 해당함을 증빙하는 서류	지자체(동사무소)
	⑩ 청약저축 추가납입회수(전용 50㎡이상주택 신청자만 해당)	청약저축순위서류로 확인	가입은행
	⑪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청약저축 가입자(전용면적50m²이상 신청자만 해당)	임대차계약서 사본, 청약저축통장 1면 사본	-

⑦ 당첨자 결정 및 계약안내

- 주택의 동·호는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충별 향별 구분없이 컴퓨터로 무작위 추첨하며 당첨자 명단은 LH(한국 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구월사옥에 게시하며 공사 홈페이지(www.lh.or.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 (개별통보하지 않으며 착오를 방지하기 위하여 전화로 답변드리지 않습니다.)
-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일정인원을 예비당첨자로 선정하며. 예비당첨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시 순위에 따라 계약 체결함.
 - ※ 홈페이지 확인방법 1) LH(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http://www.lh.or.kr) 접속
 - 2) 초기화면의 메뉴 당첨자조회 선택
 - 3) 당첨자 조회에서 신청지구명을 찾은 후 개별조회 또는 당첨자 명단 확인

▶ 계약일시 및 장소

2010.05.13 ~05.14 (09:30~15:30)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구월동 사옥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464번지) ※ 신청접수 장소와 다름 유의바람

- 당첨자는 ① 계약금 ② 주민등록증사본 또는 여권사본 ③ 인감도장(계약자 본인은 사인가능) ④ 신분증을 준비하여 지정된 기간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함
- 계약은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만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에 한하여 대리를 허용함 (단, 대리인의 경우에는 본인이 작성한 ① 위임장 ② 인감증명서(인감도장 날인)을 제출해야 함)

⑧ 유의사항 (신청전에 반드시 읽어보셔야 하는 내용임) 관련항목 유의사항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기간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입주기준소득을 초과한 입주자는 소득초과정도에 따라 일정비율만큼 인상된 임대 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납부하거나 퇴거하여야 합니다. ② 임대대상 •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의 면적을 말하며, 기타공용면적은 관리사무소, 및 조거 노인정, 경비초소, 지하층, 지하주차장 등의 면적입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월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샤시 설치에 따라 내·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이 주택의 계약자(세대원 포함)는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주이어야 합니다. 주택소유여부 및 자산소유기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 내에 증명서류(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③ 신청자격 이니한 지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제21조의2"에 따르며, 입주신청시 무주택서약서 뒷면에 명기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국민임대주택 입주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주, 토지 및 자동차보유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계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 • 신청접수는 신청대상자별로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선순위 신청자가 모집호수를 ④ 공급일정 초과하면, 후순위자는 접수받지 않습니다.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전환되는 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⑤ 입주자 선정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명도 하지 않을 경우 전부 무효처리됩니다. • 1세대(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처리됩니다.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다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 해야 합니다. ⑥ 신청서류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입주신청은 본인, 배우자,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직계존비속만 가능하며, 불 가피한 사유로 대리신청을 할 경우에는 위임장(계약자의 도장날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당첨이후 연락처(주소,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기 ⑦ 당첨자 바란니다 결정 및 • 계약체결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후 3개월 계약안내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치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지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선수금을 1회 부과하며, 퇴거할 때 돌려드립니다. • 입주시 잔금 및 관리비선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 ⑧ 기타사항 하여야 합니다 • 전세자금대출은 국민주택기금 취급은행 (우리은행, 농협중앙회,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에서 받으실 수 있으며, 계약자의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를 은행과 미리 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주택기금 취급은행 (우리은행, 농협중앙회,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에서 "저소득가구 전세자금"을 대출받으신 분은 국민임대주택 입주 시 대출받으신 금액을 전액 상환하셔야 합니다. • 세대모형,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컷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위한 것이므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팜플렛에 기재된 제품은 자재의 품절, 품귀, 제조회사 등의 도산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동가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및 계약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재정경제부고시 제2006-36호)에 따라보상될 수 있습니다
- 이 주택의 감리회사는 토무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대흥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 사무소이고 입주개시일 이전에 입주예정자의 사전점검을 실시하며, 구체적인 일정은 계약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 이 주택의 시공업체는 (주)효성이며, 연대보증업체는 건설공제조합입니다.
- 소래논현 도시개발사업지구 조성 사업은 (주)한화. 주식회사 화인파트너스에서 시행 하는 시업으로 도로, 상하수도, 학교 등의 각종 기반시설 설치는 시업추진과정에서 국가, 지자체, (주)한화, 주식회사 화인파트너스, 교육청 등 관련기관에 의하여 변경 또는 취소되거나 입주시기에 맞추어 완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지구의 학교 등 각종 교육시설의 개교시기 등은 해당 교육청의 설립계획에 따르며. 도시개발 사업지구 조성계획의 변경 및 해당 교육청의 변경 요청 등에 의하여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임대주택법, 및 「주택공급에관한규칙」등 관계 법령에 의합니다.

🌘 노약자·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안내

노약자와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계약자 본인 또는 가족 중 65세 이상 노인, 3급 이상 지체장애인(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등이 있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대상에 따라 아래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하여 드립니다.

구 분	설치 내용	제공대상
현 관	마루굽틀 경사로 설치	지체장애인
욕 실	바닥단차 제거, 출입문 규격확대 및 개폐방향 변경, 좌식사워시설, 좌변기안전손잡이, 수건걸이 높이조정	고 령 자 지체장애인
	높낮이조절 세면기	지체장애인
주 방	가스밸브 높이조정, 좌식 씽크대(물버림대)	지체장애인
주동 · 통로유도시설	음성유도신호기	시각장애인

-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시설내역과 세부설명자료, 신청서 등은 계약 장소에 비치
- 신청시 필요서류 : 신청자격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장애인수첩 사본 등
- 신청기간 : 계약 체결기간 내

기타사항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검색대상 : 신청자와 그 세대원 및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 전부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전국소재주택(주택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무주택 판정기준 : 검색대상자 중 누구라도 요구된 무주택기간 내에 주택소유 사실이 있으면 무주 택자로 보지 않음
- ※ 주택의 취득 처분일은 건물등기부상 접수일(미등기건물은 건축물대장상 처리일) 기준임
-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 가.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하여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
- 나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 소재 주택 중 현 소유자가 당해지역에 거주(피상속인이 거주한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 다른 주택 건설지역으로 이주한 이래 주택.
- (1) 사용검사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2) 85m²이하의 단독주택
- (3)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분양을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반은 날부터 3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처분한 경우 라.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한 주택
- 또는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 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만 소뉴아고 있는 경두

 마.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아파트는 제외)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한다.)

 바.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공공기관건설주택 및 국민임대주택을 우선 공급받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사.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비성조체크리티 비져겨차차지고 투다바일 나비리 2월 이내에 명실 또는 실제 사용하는 용도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당첨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멸실 또는 실제 사용하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아.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신청접수 장소: LH(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만수동 사옥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007-8)

• 나 안천지역본부 만수동사옥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6동 1007-8)은 동부교육청 맞은 편에 위치하고 있음.

• 대중교통 : 1호선 송내역에서 일반버스 16-1번(담방부락 하차)

909번(만월중학교 혹은 만수동 우체국 하차)

1호선 동암역에서 마을버스 535번(만월중학교 하차)

- ▶ 계약체결 장소 : LH(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구월동 사옥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464)
- 대중교통 이용시
- 나 인천지역본부 구월동 사옥
- 대중교통 : 인천지하철 예술회관역 6번 출구에서 도보 5분
- ※ 주차공간이 협소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뒷면 약도 참조

이 주택은 무주택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복권기금 등) 지원으로 건설됩니다.

팜플렛 배포	LH(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임대공급팀
임대 문의	전국대표전화 : 1600-7100 LH(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고객상담실 : 032-890-5400
인 터 넷	http://www.lh.or.kr:LH(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주요마감재 시설내역

공 종		품 목	시 설 내 역	비고
		현관바닥	자기질 타일(400×400)	
		마루귀틀	인조대리석(BMC급)	
		욕실벽	도기질 타일(250×400)	
	타 일 바닥재 벽 지	욕실바닥	자기질 타일(200×200)	
		주방벽	도기질 타일(400×250)	
		발코니 바닥	자기질 타일(200×200)	
		거실바닥	PVC마루	
		침실바닥	륨카펫트(2.0T)	
		벽지/천정지	실크/발포	
	창호 및 몰딩류	욕실문	합성수지	
건 축		침실문	ABS	
신 푹		외부창호(발코니 샷시)	합성수지제(일면 래핑)	
		천정등박스	합성수지위 비닐시트	
		반자돌림, 커텐박스	합성수지위 비닐시트	
	주방가구 기 타	상판	BMC급 인조대리석	
		문짝	HPM	
		씽크볼	스텐언더	
		세대현관문	스크린 인쇄	
		세대현관 도어록	레버형	
		침실 도어록	레버형	
		발코니난간	분체도장	
		신발장, 반침장 문짝	HPM	
	온도조절기		디지털식	
		레인지후드	슬림형	
		비디오폰	칼라	
설비류		욕조	아크릴급	29, 36A, 36B 제외
		세면기	단독형도기	
		양변기	준원피스형	
		욕조, 세면기 수전	싱글레버 혼합수전	

^{*}마감재는 자재의 품절, 품귀, 제조사의 도산 등에 따라 이상의 타사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인천지역본부 고객상담실:032)890−5400 │ 전국대표전화:1600−7100(국번없이)

인천소래 휴먼시아 국민임대아파트

A₁BL

